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00
----------	-------

발의연월일 : 2024. 10. 24.

발 의 자 : 안도결 · 임호선 · 조인철
이용선 · 이언주 · 전용기
박홍배 · 박민규 · 김남근
김우영 · 양부남 · 정진욱
복기왕 · 손명수 · 민병덕
박지혜 · 조계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기금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

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기금 설립 취지와 상충되는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민간 투자의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 삭제).

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3조제2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중 “7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① (생략)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u>26명</u>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u>집합투자기구</u> (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	2. ----- ----- ----- ----- ----- ----- ----- <u>집합투자기구</u>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대비용 3. ~ 5. (생략) ③ (생략) ④ <u>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u>7명</u>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u>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u>----- ----- -----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8명</u>----- -----
--	---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	---